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11일

동탄6동장인
화성시 동탄6동장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임 *진	윤 *열 2002-01-19	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2길 (오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11
최 *명	최 *명 1985-05-15	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2길 (오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11